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금리 기준 하향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60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	6
참고 1. 지자체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사업 현황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가 취업, 진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지역인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학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연구비 지원 등의 근거와 함께,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2019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중의 50%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중은 역전된 상태로, 갈수록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심해지면서 정치·경제·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고 있음.

지방 청년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파악되고, 청년들은 수도권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유리한 좋은 대학, 적성에 맞는 일자리, 높은 기대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한다는 의견²⁾이 있음.

이는 곧 지방대학의 공동화와 지방 기업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며 결국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 가속화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지역인재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지원책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을

-
- 1) **지방대육성법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리우용상·정혜민·김성환,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따른 취업자의 지역 이동 특성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제39권제1호, p86, 2024.2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국 17개 시도 25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2023년말 기준 17개 시도, 45개 시·군·구에서 110,498명에 학자금대출 원리금 92억 2,600만원을 지원함.

< 지자체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사업 현황³⁾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07,550	8,729	120,424	10,686	89,406	7,589	110,498	9,226
지자체 이자지원	107,307	8,381	119,940	10,098	89,032	7,116	110,337	9,069
원금지원	243	347	484	588	374	473	161	157

자료: 교육부

둘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3.12.26. 개정, '24.7.1. 시행)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예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 다자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⁴⁾되는 등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국

3) 참고 1. 지자체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사업 현황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2023. 12. 26. 개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 휴학기간 및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

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동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 학자금대출 상환(이자 및 원금)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현재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지원 중인바,

개정안과 같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 인재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지원하려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193

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함.

- 재난 발생 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유예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아울러,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참고 1. 지자체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 자 체 이 자 지 원	경기도	62,802	5,280,941	58,141	5,344,752	48,495	4,161,675	49,534	4,270,604
	경상남도	1,650	105,000	2,221	171,705	370	17,424	907	45,210
	과천시	-	-	18	2,045	-	-	-	-
	광주광역시	2,792	185,485	4,044	245,417	875	46,007	2,092	144,968
	대전광역시	-	-	3,214	339,960	3	106	1,121	131,832
	서울특별시	13,969	1,145,925	15,482	1,485,432	18,115	1,764,878	35,044	3,258,076
	성남시	1,554	167,541	-	-	-	-	-	-
	인천광역시	3,663	120,811	3,590	139,543	3,249	141,104	2,956	152,341
	장수군	-	-	3	136	1	6	-	-
	제주자치도	2,772	243,315	983	86,568	2,377	179,587	1,199	93,612
	충청북도	1,610	96,342	3,629	177,011	708	33,299	641	30,021
	경상북도	2,511	248,499	1,501	115,729	986	36,304	800	31,067
	통영시	165	8,207	74	6,070	32	1,599	56	3,629
	대구광역시	-	-	5,404	533,245	1,334	65,569	2,923	156,858
	전주시	2,190	119,977	2,073	103,534	1,984	93,148	699	30,547
	김제시	79	3,054	68	2,689	53	2,190	12	505
	완주군	107	3,604	51	1,789	20	584	30	887
	진안군	3	58	4	39	2	30	1	5
	부산광역시	6,235	378,948	9,835	757,456	5,187	285,610	4,359	231,444
	아산시	362	22,857	112	9,402	74	6,497	89	5,513
	군산시	390	14,118	372	13,363	88	3,408	168	7,511
	남원시	113	6,139	42	2,018	53	2,555	33	1,229
	세종자치시	375	24,329	366	29,667	255	17,498	352	25,383
	수원시	958	55,776	969	42,073	212	10,437	-	-
	익산시	685	40,626	391	19,484	360	19,404	510	37,821
	정읍시	108	3,708	114	3,676	18	553	13	407
	고창군	8	269	8	296	3	58	15	594
	무주군	8	192	3	51	1	50	1	73
	부안군	13	484	7	188	8	351	2	29
	순창군	2	81	1	6	-	-	2	27
	임실군	8	439	5	544	2	147	4	360
	당진시	52	4,340	42	2,783	18	778	26	935
	의령군	19	1,202	12	232	-	-	8	862
	울산광역시	849	41,508	1,764	85,641	489	21,928	772	33,694
	충청남도	-	-	1,202	71,369	1,216	75,352	1,773	118,194
	강화군	14	1,353	20	1,391	8	129	18	718
	광양시	-	-	141	8,938	110	8,017	-	-
	용인시	-	-	1,119	102,915	480	30,319	499	29,701
	목포시	118	4,278	259	18,531	-	-	-	-
	보령시	53	1,451	76	2,254	41	1,763	17	435
	안동시	189	7,974	69	4,991	20	1,065	48	1,961

	영주시	47	3,637	-	-	32	2,949	28	915
	천안시	834	38,781	820	43,266	602	28,137	454	23,262
	예산군	-	-	49	3,607	-	-	2	125
	양산시	-	-	541	59,399	202	8,859	308	14,563
	안성시	-	-	160	12,747	61	4,691	87	6,614
	진주시	-	-	863	41,365	349	17,121	500	26,721
	경산시	-	-	78	4,486	37	1,022	120	4,538
	전라남도	-	-	-	-	483	23,476	875	53,723
	구미시	-	-	-	-	19	544	51	2,110
	강원도	-	-	-	-	-	-	1,188	89,813
	소계	107,307	8,381,249	119,940	10,097,804	89,032	7,116,229	110,337	9,069,442
원 금 지 원	대전장학재단	2	2,000	236	229,583	87	85,608	124	119,959
	세종자치시	25	45,749	36	58,879	43	43,000	37	37,000
	충청남도	216	299,605	212	299,920	244	344,183	-	-
	소계	243	347,354	484	588,382	374	472,791	161	156,959
	합계	107,550	8,728,603	120,424	10,686,186	89,406	7,589,020	110,498	9,226,401